

賃金實態分析報告書

最低賃金委員會

목 차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5
2. 조사범위 및 대상	5
3.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6
4. 조사방법	6
5. 조사사항	6
6. 용어 정의	6
7. 기타	9
II. 주요 분석결과	11
1. 분석대상 및 내용	13
2. 표본사업체의 주요 특성	13
3.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 실태	19
III. 통계 표	33
1. 산업별, 규모별 실제조사 사업체 및 근로자수	34
2. 산업별, 규모별, 특별급여 지급률별 실제조사 사업체수	36
3. 산업별, 규모별, 성별 근로자수	44
4. 산업별, 근로일수별 근로자수	48
5. 산업별, 근무형태별, 월급여액 및 월평균 특별급여액	50
6. 산업별, 연령별 근로자수, 임금, 근로시간 및 근속년수	54
7. 산업별, 학력별, 연령별, 성별 근로자수	62
8. 산업별, 혼인상태별, 근무형태별, 임금산정기준별 근로자수	78
9. 산업별, 연령별, 임금구성요소별 금액 및 구성비	82

10. 산업별, 임금계층별, 급여종류별 근로자수	92
11. 산업별, 임금계층별, 급여종류별 누적근로자수	100
12. 산업별, 임금계층별(30일기준임금), 근속년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108
13. 산업중분류별 근로자수, 월급여액 및 30일기준임금	116
14. 산업중분류별, 임금계층별(일급), 누적근로자수	122
15. 산업별, 임금계층별(일급), 성별 누적근로자수	132
16. 산업별, 임금계층별(일급), 연령별 누적근로자수	136
17. 산업별, 임금계층별(일급), 규모별 누적근로자수	152

I. 조 사 개 요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근로자의 사업체 및 인적 속성별 분포뿐만 아니라 임금내역별 구성 및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적용할 최저임금(2002년 9월 1일 효력발생)의 결정을 위한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범위 및 대상

가. 조사범위

- (1) 지 역 : 전 국
- (2) 산 업
 - 농업, 수렵업 및 임업
 - 어 업
 - 광 업
 - 제 조 업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건설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나. 조사대상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민간사업체 중에서 표본추출된 5,079개 사업체

3. 조사기준 및 실시기간

가. 조사기준기간 : 2001. 6. 1 ~ 6. 30(1개월간)

나. 조사실시기간 : 2001. 7. 16 ~ 8. 16(1개월간)

4. 조사방법 : 자계식 및 타계식 병행

5. 조사사항

가. 사업체조사

산업, 규모(사업체 및 기업체), 노동조합 조직여부, 임금조정, 특별급여 등

나. 개인조사

성, 혼인상태, 고용형태, 근무형태, 학력, 연령, 근속년수, 경력년수, 직종, 직급,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임금산정기준, 임금기준액, 정액급여(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급여, 연간특별급여액 등

6. 용어 정의

가. 고용형태

(1)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라 함은 (일반 근로자 및 유급임원을 포함)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로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자를 말함.

비상근직, 촉탁, 임시, 일용, 수습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을 통상하여 45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와 법인사업체(공법인 포함)의 유급임원(이사, 감사 등)도 상용근로자로 분류함.

(2) 임시·일용 및 수습근로자

○ 임시근로자

직명과 관계없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말함.

한시적 위원, 특별직, 비상근직, 촉탁 등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미만 재직하고 있는 자도 이에 포함됨.

○ 일용근로자

그날 그날의 필요에 의해서 고용된 자를 말함.

○ 수습근로자

조사기준일 현재 수습이나 견습 중에 있는 근로자를 말함.

나. 근무형태

(1) 정상근무제(full-time)

사업체에서 정한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근로시간을 근로한 자를 말함.

(2) 시간근무제(part-time)

1일의 정상근로시간 또는 1주의 정상근로일수가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함.

다. 근로일수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한 일수를 말함.

(1) 정상근로일수

사업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정상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의 합계를 말함.

(2) 휴일근로일수

사업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정상근로일 이외의 휴일(주휴일·취업규칙상의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의 합계를 말함.

라. 근로시간수

(1) 정상근로시간수

사업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정상근로일의 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 시각과의 사이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수를 말함.

(2) 초과근로시간수

정상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수를 말함.

마. 급 여

(1) 정액급여는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의 합계를 말함.

- 기 본 급 :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급을 말함.
- 통상적수당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근로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을 말함.
- 기타 수당 : 가족수당, 정근수당, 근속수당, 통근수당, 연·월차수당, 주택수당, 급식수당 등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말함.

(2) 초과급여

정상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지급되는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말함.

(3) 특별급여

매월 지급되는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이외에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함.

월평균 특별급여액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각종 고정상여금 및 변동상여금의 연간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함.

바. 각종 임금내역

(1) 통상임금

실제 매월(2001년 6월 기준) 지급된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말함.

(2) 정액급여

실제 매월(2001년 6월 기준) 지급된 통상임금과 기타수당의 합계를 말함.

(3) 월급여액

실제 매월(2001년 6월 기준) 지급된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의 합계를 말함.

(4) 임금총액

실제 매월(2001년 6월 기준) 지급된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와 지난 1년간(2000년 기준) 실제 지급된 연간특별급여 월할분의 합계를 말함.

(5) 통상임금 기준 시급, 일급, 월급(30일 기준임금)

○ 시급: 통상임금 기준 시간당임금률(hourly wage rate)로서 만근시의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각각 지불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함(월급제 근로자). 단, 월급제 이외(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연봉제, 도급제 등) 근로자는 기본급을 실제 근로한 정상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통상적 수당을 지불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함.

○ 일급: 통상임금 기준 1일당 임금률(daily wage rate)로서 시급×8로 산출함.

○ 월급: 통상임금 기준 1개월의 임금률(monthly wage rate)로서 만근시 받게 되는 유급휴일임금을 포함하며 시급×226으로 산출함.

6. 기 타

본 보고서는 2001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본 보고서에서 특별하게 언급되지 않은 내용(예; 표본설계 등)에 대해서는 2001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

Ⅱ. 주요 분석결과

Ⅱ. 주요 분석결과

1. 분석대상 및 내용

가. 분석대상

- 본 보고서는 2001년 6월 기준으로 조사된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raw data)를 분석자료로 이용함.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복지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중 층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5,079개 사업체 및 이들 사업체에서 추출된 498,768명의 근로자를 조사함.
- ☞ 상용근로자 1~4인 사업체에 대한 분석결과는 최저임금위원회,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 결과보고」, 2002. 5 또는 노동부,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2001 참조.
- ☞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분석결과는 최저임금위원회,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보고」, 2002. 5 참조.

나. 분석내용

- 표본사업체의 주요 특성(산업, 규모, 노조유무, 임금조정방식, 특별급여 지급률 등)별 분포를 분석함.
- 근로자의 사업체특성(산업, 규모 등) 및 근로자특성(성, 연령, 학력수준, 고용형태, 근무형태 등)별 근로자분포 및 임금, 근로시간 등 각종 근로조건을 분석함.
- 특히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임금수준별 분포를 산업, 규모, 학력수준, 연령계층별로 분석함.

2. 표본사업체의 주요 특성

가. 산업별 분포

- 표본사업체의 산업대분류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5,079개 사업체 중에서 제조업 1,708개(33.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689개(13.6%),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539개(10.6%) 등의 순서로 많이 조사됨. 한편 어업 48개(0.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64개(1.3%), 광업 71개(1.4%) 등의 순서로 적게 조사됨.

<표 1-1> 산업·규모별 표본사업체 분포

(단위 : 개소, %)

	전체	구성비	5~	10~	30~	100~	300~	500인
			9인	29인	99인	299인	499인	이상
전체	5,079	(100.0)	928 (18.3)	1,297 (25.5)	1,097 (21.6)	907 (17.9)	401 (7.9)	449 (8.8)
농업, 수렵업 및 임업	209	(4.1)	98	74	33	3	1	0
어업	48	(0.9)	22	22	3	1	0	0
광업	71	(1.4)	21	20	19	5	2	4
제조업	1,708	(33.6)	147	332	413	378	209	22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64	(1.3)	5	15	20	15	2	7
건설업	300	(5.9)	69	98	69	32	15	1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689	(13.6)	210	252	97	88	24	18
숙박 및 음식점업	143	(2.8)	47	31	21	24	11	9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42	(6.7)	41	49	65	116	43	28
금융 및 보험업	359	(7.1)	54	135	97	30	12	31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539	(10.6)	108	145	111	92	41	42
교육서비스업	209	(4.1)	38	39	62	37	16	1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6	(4.4)	18	38	48	57	23	42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72	(3.4)	50	47	39	29	2	5

나. 규모별 분포

- 표본사업체의 사업체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5,079개 사업체 중에서 500인 이상 449개(8.8%), 300~499인 401개(7.9%), 100~299인 907개(17.9%), 30~99인 1,097개(21.6%), 10~29인 1,297개(25.5%), 5~9인 928개(18.3%) 조사됨.

다. 조직유형별 분포

- 표본사업체의 노조유무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5,079개 사업체 중에서 1,647개(32.4%)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음.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은 500인 이상 73.1%, 300~499인 69.3%, 100~299인 50.3%, 30~99인 27.5%, 10~29인 13.9%, 5~9인 11.1% 등의 순서로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 표본사업체의 사업체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5,079개 사업체 중에서 2,853개(56.2%) 사업체가 단독사업체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 특히 단독사업체 비율은 500인 이상 30.5%, 300~499인 33.7%, 100~299인 43.4%, 30~99인 56.7%, 10~29인 66.0%, 5~9인 76.4% 등의 순서로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본사업체의 경영상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5,079개 사업체 중에서 645개(12.7%) 사업체가 하도급(하청) 생산업체로 나타남. 하도급업체 비율은 500인 이상 7.6%, 300~499인 8.0%, 100~299인 12.8%, 30~99인 17.5%, 10~29인 13.0%, 5~9인 11.1% 등의 순서로 전반적으로 사업체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2〉 조직유형별 표본사업체 분포

(단위 : 개소, %)

전 체	노조조직체		단독사업체		하도급업체	
	개소	(%)	개소	(%)	개소	(%)
5~9인	103	(11.1)	709	(76.4)	103	(11.1)
10~29인	180	(13.9)	856	(66.0)	168	(13.0)
30~99인	302	(27.5)	622	(56.7)	192	(17.5)
100~299인	456	(50.3)	394	(43.4)	116	(12.8)
300~499인	278	(69.3)	135	(33.7)	32	(8.0)
500인 이상	328	(73.1)	137	(30.5)	34	(7.6)

주: ()안의 수치는 각 부문에서의 비율임.

라. 임금조정 실태

- 표본사업체의 2001년 상반기중 임금조정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5,079개 사업체 중에서 2,032개(40.0%) 사업체가 임금을 조정함.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남.

〈표 1-3〉 상반기중 임금조정 표본사업체 분포

(단위 : 개소, %)

전 체	전 체		타결사업체		미타결사업체	
	개소	(%)	개소	(%)	개소	(%)
전 체	5,079	(100.0)	2,032	(40.0)	3,047	(60.0)
5~9인	928	(100.0)	290	(31.3)	638	(68.7)
10~29인	1,297	(100.0)	445	(34.3)	852	(65.7)
30~99인	1,097	(100.0)	468	(42.7)	629	(57.3)
100~299인	907	(100.0)	426	(47.0)	481	(53.0)
300~499인	401	(100.0)	189	(47.1)	212	(52.9)
500인 이상	449	(100.0)	214	(47.7)	235	(52.3)

주: ()안의 수치는 각 부문에서의 비율임.

- 상반기 중에 임금이 조정된 전체 2,032개 사업체의 임금인상기준을 살펴보면 기본급 969개(47.7%), 통상임금 544개(26.8%), 총액임금 519개(25.5%) 등의 순서로 나타남. 그러나 임금인상기준은 전년도의 기본급 47.2%, 통상임금 26.0%, 총액임금 26.7%와 그다지 차이가 없음.
- 상반기 중에 임금이 조정된 전체 2,032개 사업체의 임금인상기준별 임금인상률을 살펴보면 기본급은 7.0%, 통상임금은 7.2%, 총액임금은 7.8%로 전년도의 기본급 8.6%, 통상임금 8.8%, 총액임금 9.2%에 비하여 다소 낮아짐. 특히 임금인상률은 임금인상기준과 관계없이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낮게 나타남.

〈표 1-4〉 상반기중 임금조정 기준 및 인상률 분포

(단위 : 개소, %)

전 체	기 본 급		통상임금		총액임금	
	개소	(%)	개소	(%)	개소	(%)
전 체	969	(7.0)	544	(7.2)	519	(7.8)
5~9인	135	(7.9)	72	(8.9)	83	(9.0)
10~29인	194	(7.1)	130	(7.4)	121	(8.4)
30~99인	227	(6.9)	130	(6.7)	111	(6.9)
100~299인	205	(6.9)	118	(6.8)	103	(7.4)
300~499인	103	(6.8)	52	(6.8)	34	(7.4)
500인 이상	105	(6.0)	42	(6.5)	67	(7.2)

주: 1) ()안의 수치는 임금인상률임.

2) 총액임금이란 정액급여와 고정상여금의 합계를 말함.

마. 특별급여지급 실태

☞ 특별급여는 소위 상여금으로 이는 고정상여금(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임금 항목으로서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 등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특별급여액)과 변동상여금(고정상여금 이외에 변동적으로 지급하는 특별급여액)으로 대별됨.

- 2000년도에 지급된 특별급여 연간지급률을 살펴보면 600% 이상 1,971개 (38.8%), 500~600% 287개(5.7%), 400~500% 616개(12.1%), 300~400% 481개 (9.5%), 200~300% 553개(10.9%), 100~200% 270개(5.3%), 100% 미만 82개 (1.6%) 등의 순서로 전체 5,079개 표본사업체 중에서 4,260개(83.9%) 사업체가 특별급여를 지급함.
- 특별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업체의 비율을 사업체규모별로 살펴보면 500인 이상 3.3%, 300~499인 4.5%, 100~299인 7.8%, 30~99인 12.9%, 10~29인 21.3%, 5~9인 32.0% 등의 순서로 사업체규모가 작을수록 특별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사업체비율이 높게 나타남.

- 특별급여를 연간 600% 이상 지급한 사업체의 비율을 사업체규모별로 살펴보면 500인 이상 78.6%, 300~499인 71.6%, 100~299인 53.4%, 30~99인 34.5%, 10~29인 23.9%, 5~9인 17.0% 등의 순서로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특별급여 지급률이 높게 나타남.

〈표 1-5〉 2000년도 연간특별급여 지급률 분포

(단위 : 개소, %)

	전 체	미지급	100% 미만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600%	600% 이상
전 체	5,079 (100.0)	819 (16.1)	82 (1.6)	270 (5.3)	553 (10.9)	481 (9.5)	616 (12.1)	287 (5.7)	1,971 (38.8)
5~9인	928 (100.0)	297 (32.0)	23 (2.5)	69 (7.4)	153 (16.5)	90 (9.7)	108 (11.6)	30 (3.2)	158 (17.0)
10~29인	1,297 (100.0)	276 (21.3)	29 (2.2)	103 (7.9)	187 (14.4)	165 (12.7)	178 (13.7)	49 (3.8)	310 (23.9)
30~99인	1,097 (100.0)	142 (12.9)	23 (2.1)	70 (6.4)	109 (9.9)	129 (11.8)	179 (16.3)	66 (6.0)	379 (34.5)
100~299인	907 (100.0)	71 (7.8)	3 (0.3)	23 (2.5)	62 (6.8)	68 (7.5)	110 (12.1)	86 (9.5)	484 (53.4)
300~499인	401 (100.0)	18 (4.5)	2 (0.5)	2 (0.5)	23 (5.7)	17 (4.2)	22 (5.5)	30 (7.5)	287 (71.6)
500인 이상	449 (100.0)	15 (3.3)	2 (0.4)	3 (0.7)	19 (4.2)	12 (2.7)	19 (4.2)	26 (5.8)	353 (78.6)

주: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 한편 특별급여 중에서 고정상여금을 지급한 사업체의 지급기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본급 2,712개(65.8%), 통상임금 920개(22.3%), 정액급여 256개(6.2%), 월급여액 172개(4.2%), 일정액 64개(1.6%) 등의 순서로 거의 대부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고정상여금을 지급함.

〈표 1-6〉 2000년 고정상여금 지급기준별 분포

(단위 : 개소, %)

지급업체수	기본급	통상임금	정액급여	월급여액	일정액
4,124 (100.0)	2,712 (65.8)	920 (22.3)	256 (6.2)	172 (4.2)	64 (1.6)

주: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3.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 실태

가. 산업·규모별 근로자 분포

- 2001년 6월 현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민간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6,150천명으로 추정됨.

〈표 2-1〉 산업·규모별 근로자 분포

(단위 : 천명, %)

	전체	5~ 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인 이상
전체	6,150 (100.0)	915 (14.9)	1,517 (24.7)	1,455 (23.7)	1,011 (16.4)	319 (5.2)	934 (15.2)
농업, 수렵업 및 임업	14 (0.2)	3	5	5	1	0	0
어업	9 (0.1)	0	1	6	2	0	0
광업	16 (0.3)	1	5	4	1	1	4
제조업	2,581 (42.0)	222	510	633	447	151	618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5 (0.7)	1	4	12	15	1	11
건설업	302 (4.9)	75	104	55	31	11	2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713 (11.6)	203	250	134	74	27	25
숙박 및 음식점업	165 (2.7)	65	43	28	14	5	9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05 (8.2)	36	72	115	199	44	39
금융 및 보험업	402 (6.5)	50	171	102	26	18	35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653 (10.6)	115	191	167	106	30	44
교육서비스업	296 (4.8)	48	60	106	38	16	3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72 (4.4)	44	50	44	40	12	82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77 (2.9)	52	52	43	18	3	9

주: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 ☐ 본 보고서에서 근로자수는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민간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수를 모수로 하여 추정된 수치임.

-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6,150천명 중에서 제조업 2,581천명 (42.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713천명(11.6%),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653천명(10.6%) 등의 순서로 많이 나타남. 한편 어업 9천명(0.1%), 농업, 수렵업 및 임업 14천명(0.2%), 광업 16천명(0.3%) 등의 순서로 적게 나타남.
- 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6,150천명 중에서 500인 이상 934천명(15.2%), 300~499인 319천명(5.2%), 100~299인 1,011천명(16.4%), 30~99인 1,455천명(23.7%), 10~29인 1,517천명(24.7%), 5~9인 915천명(14.9%)로 나타남.

나. 산업·규모별 근로자특성별 분포

〈표 2-2〉 산업별 근로자특성별 분포

(단위 : 천명, %)

	성		고용형태		근무형태	
	남자	여자 (비율)	상용	비상용 (비율)	정상제	시간제 (비율)
전체	4,274	1,876 (30.5)	6,058	92 (1.5)	6,089	61 (1.0)
농업, 수렵업 및 임업	12	2 (13.4)	13	1 (4.7)	13	0 (0.3)
어업	8	1 (13.1)	9	0 (0.6)	9	0 (0.0)
광업	15	1 (8.0)	16	0 (1.6)	16	0 (1.8)
제조업	1,839	742 (28.7)	2,555	26 (1.0)	2,554	26 (1.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1	5 (10.0)	45	0 (0.8)	45	0 (1.1)
건설업	260	42 (13.9)	299	3 (1.0)	302	0 (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482	231 (32.3)	697	16 (2.3)	699	14 (2.0)
숙박 및 음식점업	78	87 (52.7)	151	14 (8.5)	158	7 (4.5)
운수, 창고 및 통신업	442	63 (12.6)	503	2 (0.5)	504	2 (0.3)
금융 및 보험업	229	172 (42.8)	395	7 (1.7)	398	4 (0.9)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496	157 (24.1)	644	9 (1.4)	649	3 (0.5)
교육서비스업	165	131 (44.3)	291	5 (1.6)	293	3 (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1	181 (66.7)	269	3 (1.2)	271	1 (0.2)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16	61 (34.4)	172	5 (2.6)	177	1 (0.3)

- 근로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6,150천명 중에서 여성근로자는 1,876천명 (30.5%)로 나타남. 특히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66.7%, 규모별로 살펴보면 5~9인 사업체에서 36.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6,150천명 중에서 비상용(임시·일용 및 수습근로자) 근로자는 92천명(1.5%)로 나타남. 그러나 비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8.5%, 규모별로 살펴보면 5~9인 사업체에서 2.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근로자의 근무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6,150천명 중에서 시간제근무자는 61천명(1.0%)로 나타남. 마찬가지로 시간제근무자의 비율은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4.5%, 규모별로 살펴보면 10~29인 및 30~99인 사업체에서 1.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3〉 규모별 근로자특성별 분포

(단위 : 천명, %)

	성		고용형태		근무형태	
	남자	여자 (비율)	상용	비상용 (비율)	정상제	시간제 (비율)
전 체	4,274	1,876 (30.5)	6,058	92 (1.5)	6,089	61 (1.0)
5~9인	577	337 (36.9)	888	27 (2.9)	905	9 (1.0)
10~29인	1,033	484 (31.9)	1,492	25 (1.7)	1,499	18 (1.2)
30~99인	997	457 (31.4)	1,431	24 (1.6)	1,437	18 (1.2)
100~299인	738	272 (26.9)	1,003	7 (0.7)	1,001	10 (0.9)
300~499인	227	91 (28.6)	316	3 (0.9)	318	1 (0.3)
500인 이상	700	234 (25.0)	929	6 (0.6)	929	5 (0.5)

다. 연령·학력수준별 근로자 분포

- 근로자의 학력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6,150천명 중에서 중졸이하 826천명 (13.4%), 고졸 2,883천명(46.9%), 초대졸 890천명(14.5%), 대졸이상 1,550천명 (25.2%)로 나타남. 이는 전년도의 중졸이하 15.2%, 고졸 47.4%, 초대졸 13.4%, 대졸이상 24.0%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아 근로자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 근로자의 연령계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6,150천명 중에서 19세 이하 61천명 (1.0%), 20~24세 642천명(10.4%), 25~29세 1,149천명(18.7%), 30~39세 2,069천명(33.6%), 40~49세 1,454천명(23.6%), 50~54세 371천명(6.0%), 55~59세 218천명(3.5%), 60세 이상 186천명(3.0%)로 나타남.
- 근로자의 연령계층·혼인상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6,150천명 중에서 미혼 근로자는 1,995천명(32.4%)로 나타남. 한편 혼인상태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미혼근로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음.

〈표 2-4〉 규모별 근로자특성별 분포

(단위 : 천명, %)

	전 체		학력수준				혼인상태	
	구성비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이상	기혼	미혼 (비율)
	6,150	(100.0)	826 (13.4)	2,883 (46.9)	890 (14.5)	1,550 (25.2)	4,155	1,995 (32.4)
19세 이하	61	(1.0)	7	53	1	0	1	60 (98.7)
20~24세	642	(10.4)	13	417	162	51	34	608 (94.7)
25~29세	1,149	(18.7)	15	535	278	321	330	819 (71.3)
30~39세	2,069	(33.6)	98	950	306	715	1,646	423 (20.4)
40~49세	1,454	(23.6)	348	651	121	334	1,390	64 (4.4)
50~54세	371	(6.0)	157	141	12	61	359	12 (3.3)
55~59세	218	(3.5)	100	78	5	35	214	4 (2.0)
60세 이상	186	(3.0)	89	57	6	34	181	5 (2.5)

라. 임금산정기준별 근로자 분포

- 근로자의 임금산정기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6,150천명 중에서 시급제 537천명(8.7%), 일급제 586천명(9.5%), 월급제 4,091천명(66.5%), 연봉제 919천명(15.0%), 기타(도급제 및 주급제) 16천명(0.3%)로 나타남. 특히 이는 전년도의 월급제 68.9% 및 연봉제 11.5%와 비교하면 월급제가 감소하고 연봉제가 증가하는 최근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음.
- 특히 가장 일반적인 임금산정기준인 월급제를 제외하면 시급제 및 일급제는 제조업에서, 연봉제는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도급제는 광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5〉 임금산정기준별 근로자 분포

(단위 : 천명, %)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기타
전체	537 (8.7)	586 (9.5)	4,091 (66.5)	919 (15.0)	16 (0.3)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 (1.3)	1 (5.4)	11 (83.9)	1 (9.4)	0 (0.0)
어업	0 (0.0)	0 (0.2)	9 (97.4)	0 (2.3)	0 (0.0)
광업	1 (7.6)	3 (15.8)	8 (46.5)	1 (6.7)	4 (23.4)
제조업	428 (16.6)	468 (18.1)	1,382 (53.5)	298 (11.5)	5 (0.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 (0.2)	0 (0.5)	43 (94.6)	2 (4.5)	0 (0.1)
건설업	7 (2.2)	4 (1.4)	243 (80.4)	48 (15.9)	0 (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9 (2.7)	12 (1.7)	541 (75.8)	139 (19.5)	2 (0.3)
숙박 및 음식점업	15 (8.8)	15 (9.3)	111 (67.6)	24 (14.3)	0 (0.0)
운수, 창고 및 통신업	47 (9.2)	67 (13.3)	351 (69.4)	39 (7.7)	2 (0.4)
금융 및 보험업	7 (1.7)	2 (0.5)	316 (78.6)	77 (19.1)	0 (0.1)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0 (1.5)	8 (1.3)	447 (68.5)	187 (28.6)	1 (0.1)
교육서비스업	1 (0.4)	0 (0.1)	263 (88.9)	30 (10.2)	1 (0.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 (0.3)	1 (0.2)	233 (85.7)	37 (13.8)	0 (0.0)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 (1.0)	4 (2.4)	134 (75.5)	37 (20.6)	1 (0.5)

주: ()안의 수치는 각 부문에서의 비율임.

마. 산업별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 민간전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748천원이며, 근로일수는 24.5일, 근로시간은 204.9시간, 근속년수는 5.9년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산업별 임금격차를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2,579천원으로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199천원으로 가장 낮음.
- 산업별 근로시간 격차를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이 215.5시간으로 가장 길고 교육서비스업이 182.5시간으로 가장 짧음.
- 산업별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12.0년으로 가장 길고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3.4년으로 가장 짧음.

〈표 2-6〉 산업별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단위 : 천원/월, 일/월, 시간/월, 년, %)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초과 급여	특별 급여	임금 총액	격차	근로 일수	근로 시간	근속 년수
						(%)			
전 체	1,270	1,152	123	355	1,748	(100.0)	24.5	204.9	5.9
농업, 수렵업 및 임업	1,302	1,049	105	339	1,745	(99.8)	25.2	199.8	9.7
어업	1,440	1,388	60	350	1,849	(105.8)	24.8	193.0	6.6
광업	1,262	1,079	220	331	1,813	(103.7)	25.6	215.0	8.0
제조업	1,105	1,020	192	338	1,634	(93.5)	24.8	211.1	6.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660	1,443	346	573	2,579	(147.5)	25.0	212.3	12.0
건설업	1,448	1,366	62	263	1,773	(101.4)	25.1	196.5	4.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332	1,225	53	282	1,667	(95.4)	24.8	195.2	4.8
숙박 및 음식점업	1,006	934	45	147	1,199	(68.6)	24.6	201.0	3.4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271	1,086	203	364	1,838	(105.1)	24.4	215.5	6.7
금융 및 보험업	1,642	1,403	27	790	2,459	(140.7)	24.6	186.2	8.2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317	1,227	36	282	1,635	(93.5)	23.0	214.8	4.0
교육서비스업	1,635	1,431	46	458	2,138	(122.3)	23.8	182.5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450	1,323	59	306	1,816	(103.9)	24.9	194.0	5.0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40	1,173	62	372	1,774	(101.5)	25.1	199.8	6.1

바. 규모별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 규모별 임금격차를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500인 이상이 2,349천원으로 가장 높고 5~9인이 1,377천원으로 가장 낮음. 특히 임금수준은 규모가 작을수록 일관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규모별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500인 이상이 8.8년으로 가장 길고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5~9인이 4.2년으로 가장 짧음. 이는 임금체계가 연공급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함.
- 그러나 규모별 근로시간 격차를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0~299인이 211.3시간으로 가장 길고 5~9인이 196.2시간으로 가장 짧아서 임금수준과는 달리 규모별로 일관된 분포를 보이고 있지 않음.

〈표 2-7〉 규모별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단위 : 천원/월, 일/월, 시간/월, 년, %)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초과 급여	특별 급여	임금 총액	격차	근로	근로	근속
							일수	시간	년수
전 체	1,270	1,152	123	355	1,748	(100.0)	24.5	204.9	5.9
5~9인	1,180	1,117	28	169	1,377	(78.7)	24.7	196.2	4.2
10~29인	1,220	1,114	62	256	1,537	(87.9)	24.6	202.4	4.7
30~99인	1,251	1,123	118	299	1,667	(95.4)	24.6	208.5	5.4
100~299인	1,280	1,147	175	402	1,857	(106.2)	24.5	211.3	6.6
300~499인	1,368	1,235	180	534	2,082	(119.1)	24.4	207.1	7.5
500인 이상	1,424	1,271	249	676	2,349	(134.4)	24.3	204.0	8.8

주: ()안의 수치는 전체를 100.0으로 한 상대적인 지표임.

사. 학력수준별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 학력수준별 임금격차를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이 2,443천원으로 가장 높고 중졸이하가 1,317천원으로 가장 낮음. 특히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임금수준이 일관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초과급여의 절대적 수준 및 상대적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학력수준별 근로시간 격차를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졸이하가 226.7시간으로 가장 길고 대졸이상은 186.9시간으로 가장 짧음. 특히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계층에서 초과급여의 절대적 수준 및 상대적 비중이 높은 현상과 일치함.
- 그러나 학력수준별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중졸이하가 6.7년으로 가장 길고 초대졸이 4.7년으로 가장 짧는데, 이는 학력수준별 평균연령(중졸이하 47.7세, 초대졸 31.4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표 2-8〉 학력수준별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단위 : 천원/월, 일/월, 시간/월, 년, %)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초과 급여	특별 급여	임금 총액	격차	근로 일수	근로 시간	근속 년수
						()			
전 체	1,270	1,152	123	355	1,748	(100.0)	24.5	204.9	5.9
중졸이하	891	786	196	230	1,317	(75.3)	24.4	226.7	6.7
고 졸	1,087	980	156	303	1,546	(88.5)	24.7	210.7	5.7
초 대 졸	1,210	1,103	79	302	1,591	(91.0)	24.7	197.1	4.7
대졸이상	1,845	1,695	49	549	2,443	(139.7)	24.3	186.9	6.6

주: ()안의 수치는 전체를 100.0으로 한 상대적인 지표임.

아. 연령계층별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 연령계층별 임금격차를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40~49세가 2,120천원으로 가장 높고 19세 이하가 891천원으로 가장 낮음. 특히 연령-임금 곡선은 역U자 형태로 임금수준이 일정 연령까지 급격하게 높아지다가 다시 약간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연령계층별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50~54세가 9.9년으로 가장 길고 19세 이하는 0.9년으로 가장 짧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일정 연령까지는 비례적으로 근속년수가 길어지고 있음.
- 연령계층별 근로시간 격차를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령계층별로 일관된 특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중고령층의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남.

〈표 2-9〉 연령계층별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단위 : 천원/월, 일/월, 시간/월, 년, %)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초과 급여	특별 급여	임금 총액		근로 일수	근로 시간	근속 년수
						격차			
전 체	1,270	1,152	123	355	1,748	(100.0)	24.5	204.9	5.9
19세 이하	673	607	119	100	891	(51.0)	24.8	206.0	0.9
20~24세	790	719	87	154	1,031	(59.0)	24.7	201.6	1.8
25~29세	1,037	949	93	254	1,383	(79.1)	24.6	198.8	2.9
30~39세	1,378	1,246	132	418	1,928	(110.3)	24.6	201.4	5.9
40~49세	1,506	1,359	155	459	2,120	(121.3)	24.7	206.5	9.0
50~54세	1,426	1,289	160	417	2,003	(114.6)	24.5	214.9	9.9
55~59세	1,294	1,195	99	294	1,688	(96.5)	23.5	227.0	7.8
60세 이상	1,162	1,097	47	198	1,407	(80.5)	22.8	234.1	6.2

주: ()안의 수치는 전체를 100.0으로 한 상대적인 지표임.

자. 최저임금액 수급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 2000년 9월~2001년 8월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급 1,865원, 일급 14,920원, 월환산액 421,490원 그리고 2001년 9월~2002년 8월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급 2,100원, 일급 16,800원 월환산액 474,600원이었음.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내역은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을 합산한 ‘통상임금’과 유사함. 이하에서는 최저임금 수급근로자를 통상임금 기준 시간당임금률의 상하 5% 이하($1865 \times 0.95 \leq \text{시급} \leq 1865 \times 1.05$, $2100 \times 0.95 \leq \text{시급} \leq 2100 \times 1.05$)로 정의하고, 이들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최저임금액 수급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임금총액 기준)은 674~792천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38.6%~45.3%로 나타나고 있지만, ‘평균적인’ 근로시간은 전체 근로자에 비하여 오히려 길게 나타나고 있음.
- 최저임금액 수급근로자들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통상임금 이외에 기타수당,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의 형태로 ‘평균적으로’ 매월 275~350천원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0〉 최저임금액 수급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단위 : 천원/월, 일/월, 시간/월, %)

	전 체		시급 1,865원 기준		시급 2,100원 기준	
정액급여	1,270	(100.0)	486	(38.3)	555	(43.7)
기 본 급	994	(100.0)	382	(38.5)	423	(42.5)
	158	(100.0)	17	(10.7)	20	(12.7)
	117	(100.0)	87	(73.7)	112	(95.5)
초과급여	123	(100.0)	122	(98.7)	151	(122.6)
특별급여	355	(100.0)	67	(18.8)	86	(24.3)
임금총액	1,748	(100.0)	674	(38.6)	792	(45.3)
근로일수	24.5	(100.0)	24.8	(100.9)	24.6	(100.3)
근로시간	204.9	(100.0)	226.0	(110.3)	227.9	(111.2)

주: ()안의 수치는 전체를 100.0으로 한 상대적인 지표임.

차. 저임금계층 근로자 분포

☞ 이하에서는 일급 14,920원(2000년 9월~2001년 8월 적용 최저임금액) 및 일급 16,800원(2001년 9월~2002년 8월 적용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를 각각 저임금 근로자로 규정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사업체특성(산업 및 규모) 및 근로자특성(학력수준 및 연령계층)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일급 14,920원(2000년 9월~2001년 8월 적용 최저임금액) 및 16,800원(2001년 9월~2002년 8월 적용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수는 각각 57천명 및 143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각각 0.9% 및 2.3%로 나타남.
- 산업별로 저임금근로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급 16,800원(2001년 9월~2002년 8월 적용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는 제조업 68천명(47.3%) 및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35천명(24.2%)로 저임금근로자가 이들 산업에 거의 대부분 집중되어 있음.
- 그러나 산업별로 저임금근로자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5.3%, 숙박 및 음식점업이 3.5%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표 2-11〉 산업별 저임금근로자 분포

(단위 : 천명, %)

	전 체		일급 14,920원 미만			일급 16,800원 미만		
	근로자	구성비	근로자	구성비	비율	근로자	구성비	비율
전 체	6,150	(100.0)	57	(100.0)	0.9	143	(100.0)	2.3
농업, 수렵업 및 임업	14	(0.2)	0	(0.3)	1.2	0	(0.2)	1.6
어업	9	(0.1)	0	(0.0)	0.0	0	(0.0)	0.8
광업	16	(0.3)	0	(0.4)	1.3	0	(0.3)	2.5
제조업	2,581	(42.0)	26	(45.7)	1.0	68	(47.3)	2.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5	(0.7)	0	(0.1)	0.1	0	(0.1)	0.3
건설업	302	(4.9)	1	(1.7)	0.3	3	(1.8)	0.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713	(11.6)	4	(7.1)	0.6	11	(7.9)	1.6
숙박 및 음식점업	165	(2.7)	2	(2.7)	0.9	6	(4.1)	3.5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05	(8.2)	2	(3.6)	0.4	7	(4.7)	1.3
금융 및 보험업	402	(6.5)	1	(1.5)	0.2	2	(1.7)	0.6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653	(10.6)	17	(28.8)	2.5	35	(24.2)	5.3
교육서비스업	296	(4.8)	2	(3.1)	0.6	4	(2.7)	1.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72	(4.4)	1	(1.2)	0.3	2	(1.5)	0.8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77	(2.9)	2	(3.7)	1.2	5	(3.5)	2.9

- 규모별로 저임금근로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급 16,800원(2001년 9월~2002년 8월 적용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는 30~99인 51천명(35.9%), 10~29인 37천명(25.7%), 100~299인 28천명(19.4%)로 저임금근로자는 중견규모의 기업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음.
- 또한 규모별로 저임금근로자의 발생비율을 살펴보다도 30~99인 3.5%, 100~299인 2.8%, 10~29인 2.4%로서 중견규모의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12〉 규모별 저임금근로자 분포

(단위 : 천명, %)

	전 체		일급 14,920원 미만			일급 16,800원 미만		
	근로자	구성비	근로자	구성비	비율	근로자	구성비	비율
전 체	6,150	(100.0)	57	(100.0)	0.9	143	(100.0)	2.3
5~9인	915	(14.9)	6	(10.8)	0.7	14	(9.6)	1.5
10~29인	1,517	(24.7)	12	(21.2)	0.8	37	(25.7)	2.4
30~99인	1,455	(23.7)	21	(36.3)	1.4	51	(35.9)	3.5
100~299인	1,011	(16.4)	12	(20.2)	1.1	28	(19.4)	2.8
300~499인	319	(5.2)	3	(5.5)	1.0	6	(4.1)	1.9
500인 이상	934	(15.2)	3	(6.0)	0.4	7	(5.2)	0.8

- 학력수준별로 저임금근로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급 16,800원(2001년 9월 ~ 2002년 8월 적용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는 고졸 64천명(44.8%), 중졸이하 63천명(44.1%)로 저임금근로자는 학력수준이 낮은 근로자에게 거의 대부분 집중되어 있음.
- 또한 학력수준별로 저임금근로자의 발생비율을 살펴보더라도 중졸이하 7.7%, 고졸 2.2%, 초대졸 1.3%, 대졸이상 0.3%로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13〉 학력수준별 저임금근로자 분포

(단위 : 천명, %)

	전 체		일급 14,920원 미만			일급 16,800원 미만		
	근로자	구성비	근로자	구성비	비율	근로자	구성비	비율
전 체	6,150	(100.0)	57	(100.0)	0.9	143	(100.0)	2.3
중졸이하	826	(13.4)	25	(44.0)	3.1	63	(44.1)	7.7
고 졸	2,883	(46.9)	25	(43.7)	0.9	64	(44.8)	2.2
초 대 졸	890	(14.5)	5	(9.4)	0.6	11	(8.0)	1.3
대졸이상	1,550	(25.2)	2	(3.0)	0.1	5	(3.2)	0.3

- 연령계층별로 저임금근로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급 16,800원(2001년 9월 ~ 2002년 8월 적용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는 40~49세 34천명(23.8%), 20~24세 26천명(18.2%) 등으로 연령과 일정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연령계층별로 저임금근로자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8.1%, 55~59세 6.8%, 19세 이하 6.6%, 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퇴장하는 연령계층에 보다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14〉 연령계층별 저임금근로자 분포

(단위 : 천명, %)

	전 체		일급 14,920원 미만			일급 16,800원 미만		
	근로자	구성비	근로자	구성비	비율	근로자	구성비	비율
전 체	6,150	(100.0)	57	(100.0)	0.9	143	(100.0)	2.3
19세 이하	61	(1.0)	1	(2.3)	2.2	4	(2.8)	6.6
20~24세	642	(10.4)	10	(16.8)	1.5	26	(18.2)	4.1
25~29세	1,149	(18.7)	6	(10.0)	0.5	14	(9.5)	1.2
30~39세	2,069	(33.6)	8	(13.6)	0.4	20	(13.8)	1.0
40~49세	1,454	(23.6)	13	(23.1)	0.9	34	(23.8)	2.3
50~54세	371	(6.0)	6	(11.0)	1.7	16	(11.1)	4.3
55~59세	218	(3.5)	6	(9.9)	2.6	15	(10.3)	6.8
60세 이상	186	(3.0)	8	(13.3)	4.1	15	(10.5)	8.1

Ⅲ. 통 계 표

